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74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김영배 · 최혁진 · 송기현

맹성규 · 이개호 · 서삼석

홍기원 · 민병덕 · 한병도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무회의의 공개) ① 국무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배석자,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국무회의의 공개) ①</u> <u>국무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u> <u>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u> <u>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u> <u>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u> <u>다.</u> <u>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무회</u> <u>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u> <u>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장에</u> <u>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u> <u>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국무회의의 공개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u><신 설></u>	<u>제12조의3(국무회의록) ① 간사는</u> <u>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u> <u>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u> <u>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u>

정」 제8조에 따른 배석자,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